

안심하고 신고하세요!

www.acrc.go.kr

국민결愛 110
정부민원 110

부패·공익침해 신고

1398



Android



iOS

www.mcst.go.kr

(민원마당 → 불편부조리 → 공익신고)



국민권익위원회

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·제도개선



문화체육관광부

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

부패·공익침해신고센터 (서울사무소)
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
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



공익침해행위란?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

| 법률명 | 공익침해유형(예시)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경륜·경정법 | •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투표권 발매 또는 승차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등의 행위 |
| 국민체육진흥법 | • 운동경기의 선수·감독·코치·심판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부정행위 |
|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| • 체육시설업체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·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|
| 관광진흥법 | •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미 실시 및 야영장의 안전·위생 기준 미준수 행위 등 •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행위 |

| 법률명 | 공익침해유형(예시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| • 우수문화상품을 지정받지 않고, 허위로 표시하여 제작, 유통하는 행위 |
|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•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 |
| 공연법 | •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, 안전검사 미 실시 |
|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| •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·판매·대여하는 경우 |
|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•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 |



당신의 양심에 + 안심을 더합니다

“세상을 바꾸는 힘!”

공익신고

안심하세요!

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·제도개선



문화체육관광부

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



당신의 양심에 + 안심을 더합니다

‘공익신고’란 무엇인가요?

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5대 공익 분야



279개 법률의 범위

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

※ (현행) 180개 → (16.1.25) 279개 법률

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

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‘공익신고’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신고자의 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 내용,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**서식에 따라 신고**

공익신고 대상기관

국민권익위원회, 행정기관, 수사기관, 국회의원, 공공단체(공사·공단), 해당기업 대표자

신고서 기재사항(법 제 8조 제1항)

1.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2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3. 공익침해행위 내용
4.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


홈페이지, 우편, FAX, 공익신고 앱 등으로 신고



전화는 상담만 가능

‘공익신고자’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.



공익신고자 비밀보장

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

공익신고자 신변보호

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지켜드립니다.

- 공익신고자등의 생명·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

공익신고자 보호조치

공익신고자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.
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
-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

공익신고 보상금

공익신고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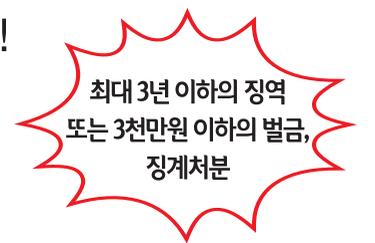
➔ **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**

공익신고 구조금

공익신고로 치료·이사·쟁송·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

➔ **구조금 지급**

➔ **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!**



※ 2016년 1월 25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

| | |
|----------|--|
| 공익신고 포상금 | 공익신고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|
| 이행강제금 부과 |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|